

『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구미시의회
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권기만의원의외 8인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이 개정되면서 상위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의회소관 「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등 7건의 조례의 조문을 개정법령에 맞게 정비하고,
-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」에 따라 낫표(「」)표기, 띄어쓰기 및 표현법 등을 일괄 정비코자함.

3. 주요내용

-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함(안 제1조 등)
- 「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」에 따라 낫표(「」)표기, 띄어쓰기 및 표현법 등 정비(안 제1조 등)

4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「지방공기업법」
- 「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」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7. 5. 11과 2007. 10. 4에 전부 개정됨에 따라 구미시의회 7개의 관련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과 문구 등을 정비하고,
-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」에 따라 낫표(「」)표기, 띄어쓰기 및 표현법 등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써 의회 회기운영 등 7개의 조례를 개별적으로 개정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개정하여 입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이며,
-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과 상충됨이 없음.